

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057
- 발 의 자 : 송명화 의원 외 20명
- 발 의 일 : 2020년 11월 6일
- 회 부 일 : 2021년 1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시 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투자 실천여부를 반영하여 공공 및 금융부문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별표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추가함(안 제 7조제2항제6호 신설).
- 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의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이고, 그 밖의 사항으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추가하여 2점을 배정함(안 별표 1).
- 다.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(안 별표 2 II 제6항 신설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회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(2020. 1. 26. ~ 2. 2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‘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’을 반영하려는 것임.

가.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

- 「지방회계법」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,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지방회계법」

제38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제48조(금고 업무의 약정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2. 주민의 이용 편의
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
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”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 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 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 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 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 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
1. 총칙

[5] 금고의 약정기간

-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.
-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.

3. 금고지정 평가기준

[1] 경쟁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

-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<별 표>의 기준으로 평가함
 - 가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25)
 - 나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7)
 - 다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18)
 - 라. 금고업무 관리능력(22)
 - 마.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(7)
 - 바. 기타사항 -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(11)

< 서울특별시 금고 운영현황 >

약정기간	금고은행	회 계	출연금	지정방법
'15.1.1~'18.12.31	우리은행	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	1,400억원	공개경쟁
'19.1.1~'22.12.31	신한은행	일반회계, 특별회계 ('21년 41.8조원(일반 28조, 특별 12조))	3,015억원	공개경쟁
	우리은행	기금 ('21년 기금 1.8조원)	1,100억원	

○ 한편, 정부에서는 「한국판 뉴딜」 종합계획(2020.7. 관계부처 합동)을 수립 하면서, 석탄발전 축소 등 탄소중립(Net-zero)을 향한 경제·사회의 녹색 전환을 지향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였고,

< 한국판 뉴딜의 구조 >



- 서울시에서는 ‘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’(2020.7.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3호)을 수립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시금고 선정 기준에 탈석탄 등 친환경 사회책임투자 가치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.
- 또한, 금고 지정 고려사항에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투자여부를 추가하려는 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이 국회에 상정(2020.9.10.)되어 소위원회에 회부(2020. 9.21.)되어 논의되고 있는 등,
 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금고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탈석탄 투자 실천 여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여짐.

나.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

1) 금고지정 평가항목 추가 (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)

- 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은 공개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현행 평가항목 외에 금고의 지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별표에 추가 규정(별표 1)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금고지정 평가기준) ① (생략)	제7조(금고지정 평가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.	② ----- ----- -----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	-. 1. -----

현 행	개 정 안
재무구조의 안정성	-----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2. -----
3. 시민의 이용 편의성	3. -----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4. -----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	5. ----- ---
<신 설>	6.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 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

2) 평가항목 신설 및 평가세부항목 배점 기준 조정 (별표 1)

○ 안 별표 1의 제5호 나목은 금고지정 평가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)의 평가 세부항목인 ‘시와의 협력사업계획’(나목)의 배점기준을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하향하려는 것으로,

-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이하 “예규”)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본 개정안과 같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향후 출연금 세입의 감소가 예견되는바, 이에 대한 재무국의 대응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※ 현 서울시 금고(2019.1.1.~2022.12.31.(4년)) 출연금 규모 : 4,115억원(1금고 3,015억원, 2금고 1,100억원)

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
[시행 2019. 5. 9.] [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, 2019. 5. 9., 일부개정.]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◇ 제·개정 이유

- 최근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치단체·금융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

◇ 주요내용

가. 협력사업비 평가는 유지하되, 과당경쟁 제한

-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(4→2점)하고, 객관적 지표인 금리 분야 경쟁으로 유인 (금리 배점 확대, 15→17점)
-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지자체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·감독체계 마련

나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

-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* 도입에 따라 그 평가결과를 지자체 자율로 금고 선정에 반영 가능
- *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·저신용자에 대한 대출,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
- ‘지점 수’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에 대한 평가 강화
-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은행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방법 개선

다.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

- 금고선정 평가결과 공개 시 금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공개
- ‘20년부터 금고선정 시 지자체 자율적으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

○ 안 별표 1의 제6호가목은 평가항목(6. 그 밖에 사항) 및 평가 세부항목 (가목)을 신설하여 ‘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’에 배점기준 2점을 부여하려는 것으로,

-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재무국에서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, 금융기관의 친환경 금융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의의 ‘탈석탄’보다는 광의의 ‘녹색 금융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세부내용으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이행 실적 등을 넣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.

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(재무과-9069(2021.2.23.))

-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탈석탄 투자 실천 여부를 반영하여 시금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,
- 금융기관이 친환경 경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, ‘탈석탄’보다는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인 ‘녹색금융’으로 변경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‘탈석탄’을 넣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.
 - 따라서 안 별표1 제6호란 가목 “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”을 “녹색금융 이행실적”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‘탈석탄 선언 및 이행실적’ 외에도 글로벌 스탠더드 대응이라는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포함시킴으로써,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선언 및 활동들을 장려·촉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,
 - 안 별표2 II 제6호 가목에 “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실적”을 “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,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”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안 별표2 I 제2호 단서 중 “평가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)”을 “평가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), 평가항목 6(그 밖의 사항)”으로 한다.” 개정안에 대해서는
 - 현재 기준에는 평가항목 2, 평가항목 5에만 순위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안 별표2 II 제6호 가목의 별표 ‘모든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고 완전히 이행한 경우 모두 만점처리 가능’ 조항에 대해서는, 일괄 만점 처리가 가능하여 이 조항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, '19년 개정된 행안부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전반적인 배점기준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.

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
3.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

○ <별표>의 기준 중 항목 6(기타사항)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.

가.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.

나.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(11점)을 항목 1, 2, 3,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.

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.

- 항목 5(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)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,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.

※ 다만,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채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 1] <u>금고지정 평가항목 및</u> <u>배점기준(제7조제1항 관련)</u>			[별표 1] <u>금고지정 평가항목 및</u> <u>배점기준(제7조제1항 관련)</u>		
평가항목	평가 세부항목	배점	평가항목	평가 세부항목	배점
계		100	계		100
1. ~ 4.	(생략)		1. ~ 4.	(현행과 같음)	
		<u>9</u>			<u>7</u>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※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"실적"으로만 평가, "시와의 협력사업"은 "계획"으로만 평가	(5) (4)	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※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"실적"으로만 평가, "시와의 협력사업"은 "계획"으로만 평가	(5) (2)
<신 설>			6. 그 밖의 사항		<u>2</u>
			가.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		(2)

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)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해야 한다.

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), 평가 항목 6(그 밖의 사항)-----

-----.

- 다만, 예규에서는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와 항목 5(지역 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)에만 순위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- 본 개정안이 상위 예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
3.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

○ <별표>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(규칙)으로 정하여야 함.

가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.

나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 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.

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)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함.

○ 별표 2의 ‘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’에 대한 개정안(별표 2 II 제 5호 개정 및 제6호 신설)은 앞에서 본 별표 1 개정안*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.

* 평가항목 5 ‘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’의 평가 세부항목 중 ‘시와의 협력사업계획’(나목)의 배점기준을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하향 평가항목(6. 그 밖에 사항) 및 평가 세부항목(가목)을 신설하여 ‘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’에 배점기준 2점을 부여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 2]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(제7조제1항 관련)</p> <p>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<u>(9점)</u></p> <p>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(5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<p>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<u>(4점)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<p>※ II-3,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</p> <p><신 설></p>	<p>[별표 2]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(제7조제1항 관련)</p> <p>II.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(7점)</u>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<u>(2점)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현행과 같음) <p>※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의 사항 (2점)</u></p> <p>가. <u>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 실적 (2점)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<u>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</u> <p>※ <u>모든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고 완전히 이행한 경우 모두 만점처리</u></p>

다. 종합의견

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(제48조제6항)에 따라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
 - 관련 예규(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) 개정(2019.5.9.)으로 현행 조례는 예규상 배점에 배치되는 상황임.
- 본 개정조례안 배점기준을 살펴보면, 예규의 최저 배점기준에 미달하는 평가 세부항목이 6개에 달하고, 지나치게 예규 기준을 초과하여 배분된 세부항목도 다수 보이는바, 각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<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교표 >

평가 항목	평가 세부(세세부)항목	예규(A)	현행 조례	개정안(B)	차이 (B-A)
합 계		100	100	100	11
1.	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25	30	30	5
	가.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8	10	10	2
	- 국외평가기관	4	6	6	2
	- 국내평가기관	4	4	4	0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17	20	20	3
	- 총자본비율(안정성)	6	7	7	1
	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6	7	7	1
	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5	6	6	1
2.	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17	18	18	1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7	6	6	-1
	나. 공공예금 적용금리	6	5	5	-1
	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	4	4	4	0
	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*	0	3	3	3
3.	시민의 이용 편의성	18	18	18	0
	가.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	7	5	5	-2
	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	5	6	6	1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	6	7	7	1
4.	금고업무 관리능력	22	25	25	3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	6	5	5	-1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8	7	7	-1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	8	7	7	-1

	라. 수납시스템(OCR센터, ETAX 등) 구축, 운영능력 및 계획*	0	6	6	6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		7	9	7	0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	5	5	5	0
	나. 자치단체 협력사업계획	2	4	2	0
6. 그 밖의 사항(개정안)*		11	0	2	2
	가. 탈석탄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(개정안)			2	2

* 예규 외 서울시 조례로 추가(안)한 평가(세부)항목

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
3.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항목 6(기타사항) 관련

○ <별표>의 기준 중 항목 6(기타사항)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.

가.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.

나.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(11점)을 항목 1, 2, 3,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.

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.

- 항목 5(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)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,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.

※ 다만,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채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.

○ 종합해 보면, 예규의 배점기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본 조례안 별표 1의 배점기준 수정 필요 여부, 별표 2 일반원칙 개정안이 예규 규정에 합당한지 여부, 평가항목명에 대한 재무국 의견(탈석탄→녹색금융) 반영 여부, 신설 평가세부항목(탈석탄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)의 적정 항목 변경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,

○ 재무국에서 추진 중인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세부 추진 계획이 도출된 후에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최석훈
------	-----	-------	-----